

제422회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10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4)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7)
-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30.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31.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2)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2)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7)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6)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7)
  3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3)
  3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9)
  4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9)
  4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1)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3)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4)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2)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9)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4)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6)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3)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 

### 상정된 안건

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 4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 4
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 4
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 4
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 4
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 4
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 4
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 4
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 4
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 4

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4
1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4)	4
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5)	4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4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4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4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4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4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5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5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5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5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8)	5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9)	5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4)	5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7)	5
27.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5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5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5
30.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5
31.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5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2)	5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2)	5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5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7)	5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6)	5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7)	5
3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3)	5
3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9)	5
4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9)	5
4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1)	5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5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5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5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5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5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5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3)	5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4) ..... 5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2) ..... 5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9) ..... 5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4) ..... 5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6) ..... 5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3) ..... 5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 5
- 

(14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정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1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4)
  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5)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8)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4)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7)
27.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30.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31.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2)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2)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7)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6)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7)
3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3)
3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9)
4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9)
4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1)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3)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4)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2)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9)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4)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6)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3)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시05분)

○소위원장 정태호 의사일정 제1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전문위원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자료 1권의 1쪽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소위에서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거래 상대방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원화표시 외평채 전자등록 규정 신설과 동일한 취지로 정무위원회 소관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해서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내용을 삭제하는 번안 의결이 필요하여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측 입장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기재위 전문위원 보고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나번은 번안하자 이거지요, 가번은 그냥 합의된 거니까 통과하고? 그런 뜻이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안건 심사를 다 마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담배 정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소위에서 심사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을 간략히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와 공청회에서는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정의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 규제 공백으로 인해 합성니코틴 액상형 유사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담배 정의에 포함시켜 합성니코틴으로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 담배를 동일하게 관리·규제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가향물질 규제가 없으므로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한 가향물질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유사담배 유해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제도권 내에서 규제하

고 유해 정도에 따라 달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세금 부과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규제의 틀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으셨습니다.

합성니코틴의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유해성 연구용역의 시료 채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에서 시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 그리고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유해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김준혁 의원 소개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청원인으로 하는 청원이 지난 금요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합성니코틴의 담배 정의 포함에 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가짜 합성니코틴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공정한 유해성 연구용역의 재실시 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지난번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는 31페이지에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공청회 진술인 진술 요지를 정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와 공청회 논의 요지를 반영해서 논의 필요 사항을 쟁점별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규제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서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유해성 연구용역에서는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천연니코틴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유해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청소년 흡연 접근성 감소 등을 위해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유사 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사업법, 담배유해성 관리법 등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합성니코틴의 담배 정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재위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합성니코틴이든 천연니코틴이든 궤련형 담배든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보건복지부의 곽순현 건강정책국장님 나오셨고 정혜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셨네요. 복지부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고.

보건복지부 혹시 무슨 의견 계세요, 오셨는데?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곽순현 복지부는 기재부 의견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일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까요, 복지부 오셨으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예.

○**정일영 위원** 전에 공청회 때 용역을 복지부에서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지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곽순현** 합성니코틴도 천연니코틴과 연초니코틴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을 다양으로 함유하고 있고 동일한 유해,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때 협회에서는 다른 의견을 얘기했지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곽순현** 예, 시료의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으로……

○**정일영 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추가 용역을 요구했고 기재부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추가 용역 계획은 없다고…… 직책이 뛰였더라, 과장님의 그때 답변했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예, 공청회 시에는 국장님이 공석이라서 제가 참석해서 발언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최종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예, 국가계약법상 타당하게 계약이 됐고……

○**정일영 위원** 계약 내용보다……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절차나 과정 그리고 결과 모두 다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용역 결과도?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예.

○**정일영 위원** 다시 용역해서 재검토할 생각도 없고?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예.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 지난 공청회 결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서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덜 유해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결과 두 물질 모두를 유독물질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덜 유해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복지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21대 국회 당시에도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당시 유동수 소위 위원장이 정부가 용역을 해서 정부 측 입장을 명확하게 듣고 전문가들 공청회를 들은 후에 처리를 하자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고 당시에 위원님들이 21대가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측에서도 이제 용

역 결과도 나와 있고 또 복지부, 환경부에서도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해성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이 궐련형 담배로 입문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합성니코틴 기반 전자담배의 사용이라는 것이 이미 수치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지체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회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 특히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금일 처리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또 다른 분요?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기재부에서는 논의 필요 사항 조항에 있어서 이견을, 여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각 사안마다 의견을 냈는데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니코틴 이외의 물질 또는 화학물질의 담배 정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서 불필요하다, 수용 곤란 그다음에 규제할 실익 없음. 나머지 논의 필요 사항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 사안과 전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간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무나 해도 상관없어요.

###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국고국장입니다.

저희는 일단 조금 전 정의 확대처럼 담배 정의를 니코틴까지 포함해서 지금 만연되어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조문을 검토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첫 번째는 합성 액상 전자담배를 별도로 규제해 가지고 그에 따른 별도의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일반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또는 타 법과의 관계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도 개정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타 법과 어떤 컨플릭트(conflict)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담배 정의에 대해 가지고 니코틴과 연초를 포함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저희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보면 4번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규정 유예 여부에 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있었잖아요. 저번에 공청회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을 고려한 거리제한 규제 유예 방안이 필요한 측면이라고 보는 반면에 기재부는 그런 논의에 관해서 동의하나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의견으로 보면 필요성이 없다 이런 취지로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현재까지 그 소매판매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규제로 전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거리제한 규정이나 두루두루? 의견이 ‘필요성에 동의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 필요’, 그러면 기재부안은 뭐예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저희 담배사업법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 규제를 받지 않는 합성 액상 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와 같은 규제를 해서 국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증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맥락에서 저희는 소매인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유통망이 확산되는 것도 관리를 해야지만 국민 건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봐서 원칙론적으로 50m의 거리제한, 소매인에 대한 거리제한 및 소매인 지정도 법 시행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차 보호라든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시장에서 정리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논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저희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보면 똑같이 액상형 담배나 기존에 있는 연초형에 나온 액상형이나 동일하게 규제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서 바로 즉각적인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논의 필요 사항 2번에 보면 과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즉각적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거거든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예, 과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규제와 과세는 사실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액상형 니코틴을 기준에 있는 연초형 니코틴 그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같이 규제하고 그에 따르는 과세도 동일하게 한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전문위원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의 필요 사항 7번 전자담배의 별도 정의 필요성에 김준혁 의원안에 관한 검토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김준혁 의원님 안은 전자담배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 내용이 연초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에 국한해서 전자담배를 정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조업 허가라든지 또 관련 연초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아닌 부분에 대한 관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들을 같이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자담배에 대해서 지금 담배사업법에 별도로 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서는 담았는데요. 지금 현재도 이미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담배와 구별해서 전자담배를 정의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인 생각이 연초니코틴과 액상형 합성니코틴이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청소년 두루두루 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기재부는 그와 더불어서 과세까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1 플러스 1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세의 정합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초, 보건복지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과 지금 기재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에 정합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국장님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세도 국민 건강 차원에서 담배에 대한 규제의 핵심적인 규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 건강증진과 기재부에서 하는 즉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합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분명히, 명확히 하는 부분은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는 과세의 문제 아닌가요? 과세를 하면 규제가 잘되나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이게 신 택스(sin tax)의 성격이기 때문에 과세를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WHO에서도 담배에 대해서 과세를 하되 담배 유사 대체품에 대해서 풍선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동일한 수준의 과세를 하라고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분……

○**진성준 위원** 제가 순전히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담배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연초를 기초로 해서 담뱃잎이나 담배 줄기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걸로 담배 여부를 판정했는데 이제는 니코틴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로 담배 여부를 결정하게끔 되는 건데……

그러면 가령 금연보조제로 활용되고 있는 니코틴 껌이라든지 니코틴 패치라든지 여기에도 이를테면 니코틴이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담배로 포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아닙니다. 니코틴이 포함돼 있는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해서 의약품으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니코틴이 포함 안된 금연보조제의 경우는 의약외품으로서 식약처에서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가령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금연보조제로 보건복지부, 식약처 이런 데다가 승인 신청을 한다거나 등록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예, 신청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일반 담배사업은 등록만 하면 생산을 할 수 있는 반면 식약처에 그걸 신청하는 순간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더 엄격한 심사를 받아서 그걸 통과해야 됩……

○**진성준 위원**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등록이 되면……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그러면 금연보조제로 유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성준 위원** 등록이 되면 세제상의 혜택은 보게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금연보조제는 담배법에 의한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한번 물어볼까요?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기왕의 금연보조제들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건 주로 입에 넣고 씹는 껌 같은 것이거나 혹은 살갗에 붙이는 패치형 이런 것

일 텐데 피우는 것도 이를테면 금연보조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 검토할 용의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곽순현 그 부분은 식약처에서 소관하는 부분이고요. 방금 기재부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금연보조제로 신청하고 허가를 받고 하려면 더 엄격한……

○진성준 위원 글쎄, 엄격하게 심사하겠지요. 엄격하게 심사할 텐데 그것의 기준은 단순히 입에다 넣고 씹느냐, 피부에 붙이느냐 이런 사용의 방법이나 양태에 관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현행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규정에도 씹거나 냠새 맡거나 피우거나 하는 것들도 다 담배로 규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것의 사용 형태가 피부에 붙여야 된다거나 입에 넣고 씹어야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규정돼 있는 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안전기준이라든지 또 니코틴 성분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이게 기존 담배와 흡사하게, 유사하게 피우는 방식일 텐데 이런 경우도 금연보조제로 용인되거나 승인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점을 묻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제가 직접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연초유—연초에서 추출한 기름—금연보조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담배와 사용 형태가 유사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것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됩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예,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구태여 그것을 나눌 이유가 없는 거다, 금연보조제로 활용되는 것은 별도의 프로세스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예, 약사법에 의해 관리가 되고요.

○진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아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와 관련되는 것인데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규정 유예 여부 관련해서, 기재부의 입장은 즉각적인 과세 필요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즉각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 관련되는 법안의 시행 시기를 보면, 97페이지의 시행일 등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안도 있고 공포 후 3개월, 공포 후 6개월 이렇게 3개월·6개월 후에 시행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종전에 이 관련 업을 하고 계시는 영세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임대인과 일정한 임대차계약을 해서 가게를 하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바로 시행되거나 3개월 후에 시행되거나 6개월 후에 시행됐을 때 과세는 즉각적, 물론 과세는 3개월·6개월 후에 과세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사이 소매인 지정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임대차 기간은 남아 있는데 과세 대상은 되고 또 50m 거리제한 규정도 적용은 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는 ‘필요성은 동의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 필요’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예컨대 과세는 하되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분들의 경우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걸로 간주하는 조항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법의 적용 시점을 좀 더 여유 있게 유예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기재부차관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언제 과세를 하느냐 그다음에 소상공인 보호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 그 두 가지 부분인데요. 저희는 부칙에서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과세나 소매인 거리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법이 시행되면 바로 적용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임대차계약이 기본적으로 2년, 1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조금 논의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정부는 유연하게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기재부 의견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차규근 위원** 관련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대출 위원**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순서가 정일영 위원부터예요.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기재부차관님, 이 개정안 관련해서 정부에서 기재부가 경제부처니까 기재부…… 우선 여기 관련 부처가 보건복지부, 공정위, 법무부 등등 있는데 관련 부처 회의를 좀 하셨습니까, 정부 입장은 정리·통일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21대 때도 유사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사실 기재부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때는 합성니코틴 담배의 유해성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용역을 통해서 검증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재위 소위에서도 논의할 때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부분이 검증이 된다 그러면 담배사업법의 정의를 바꿔서 규제나 과세하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21대 때 부처 간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1대 때 식약처에서 주도했었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그쪽 부분도 저희 기재부하고 식약처하고 유해성과 관련된 부분, 특히 담배와 관련된 유해성 부분은 측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것도 부처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은 올해 말에 시행이 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 큰 틀에서는 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무인 판매 등등 이런 것 보면 정부기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정부의 입장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큰 틀만 지금 정리가 되신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 복지부하고 큰 이견이 없습니다. 무인 자판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아예 무인 자판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기존의 건강증진법에 담배 무인 자판기를 아주 엄격하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사업법에 규정을 안 하더라도 기존 법에서 그게 규제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담배사업법에 무인 자판기를 금지하도록 한 것은 아예 담배와 관련된 무인 자판기는 어느 곳이라도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너무나 센 규제가 들어간 부분이라 그것은, 기존의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충분히 담배 자판기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일단 정부 입장은 개정안을 대체로 거의 다 수용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렇습니다.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부분이 사실상 핵심이기 때문에 담배의 정의만 확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과세나 그다음에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정일영 위원** 끝으로 지난 주말에 걸쳐서 엄청나게 항의 문자 같은 게 많이 오더라고요, 이것 반대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의견도 들어 보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

○**정일영 위원** 차관님, 안 들어 봤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니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반적인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공감대는 천연 액상 니코틴하고 마찬가지로 합성 액상.....

○**정일영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반대하고 계신 거예요, 정부에서 볼 때 어떤 의견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액상 담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동안 과세가 안 되고 규제가 안 되다가 담배와 같이 규제가 되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담배에 입문하는 계기가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를 통해서 처음 가격.....

○**정일영 위원** 건강 문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반대 의견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 보호,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게 확고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보건당국에서는 주로 건강 보호 쪽을 보고 저희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다른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이나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일영 위원**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곽순현**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저도 정부 입장에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출 위원** 정부 입장에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과세와 규제는 원칙으로 하고 이런 방향은 기본적으로 복지부나 기재부가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표현에서 ‘기존 사업자 간에 충돌되는 부분은 탄력적 적용’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 탄력적 적용의 정확한 뜻이 뭔지, 어떻게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합성니코틴을 판매하는 4000여 개의 업소와 거리제한에 있어서 기존 담

배사업자들과의 거리제한에 가치 충돌이 났을 때는 그러면 어떤 업체를 정리해야 되는 건지, 일정 기간이라는 유예를 둔다고 치더라도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누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영업을 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4000여 개의 합성니코틴—이를테면 유사담배라고 그러지요—4000여 개의 소매업자들이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기존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영업장하고의 거리·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분포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개개의 사정도 많이 복잡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 되면 문 닫고 다 가라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그것은 영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실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것 되니까 문 닫고 가라 일정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후에는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거리제한 해서 범위에 드는 영업장은 더 이상 운영 못 한다 이렇게 할 건지 이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게 돼야 되는데 가능하겠는지 모르겠네.

그것 없이 그냥 지금부터 법으로 금지해 놓고 기존에 하던 영업장들에 대한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쉽게 말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밥줄 끊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렇지요? 그러면 단순한 유예기간으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 거지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와의 형평성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온라인 판매 부분은 이게 만약에 합성니코틴 부분이 담배의 정의에 포함이 되게 되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부분이고요.

○박대출 위원 온라인 판매는 일절 금지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지금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고팔고 할 수가 있지만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는 순간 온라인 판매가 안 되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박대출 위원 온라인 판매 안 될 건 또 뭐 있어? 성인으면 사면 되지, 자기 신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이제 그 부분이……

○박대출 위원 기존의 담배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팔 수도 있잖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니요, 지금 담배는 온라인으로……

○박대출 위원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담배라는 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 부분은 주류를 온라인으로 마음대로 사고팔고 하는……

○박대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온라인이라는 게 택배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 앞에 배달해…… 담배 판매업체가 담배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것하고 같이 팔잖아요. 그리고 택배도 할 수 있잖아. 다른 생활필수품을 사면서 담배도 같이 갖다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원칙상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은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은 안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제도권 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판매도 제도권 안에 있는 거거든. 그 문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런데 합성니코틴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박대출 위원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궐련형 담배를 온라인으로 판매 가능하게 하느냐의 여부는 담배사업법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일단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서 자율적으로 정리를 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제한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저희가 50m……

○박대출 위원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건 일정 기간 지나면 다 영업장 폐쇄를 전제로 하는 얘기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

○박대출 위원 그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50m 거리제한이라는 것도 저희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50m라는 것을 규정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50m를 미니멈으로 깔고 100m로 하든지 200m로 하든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자체장한테 조금 더 재량권을 주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 하셨습니까?

○박대출 위원 예. 입법 리스크를 크게 만드네, 정부의 입장이.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이종욱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이종욱 위원 저는 지난번 공청회 하면서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 정리가 된 걸로 이해를 했는데 처음부터 하니까 좀 그런데요.

일단 정리하자면 이게 청소년 안전 문제도 많은 분이 지적하셨고 탈세 방지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외국에서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도 다 하고 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했던, 이게 혹시 합법화할 정도의 유해성이 있는 거냐는 확인하기로 했는데 확인도 됐고 했기 때문에 큰 방향으로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서 규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소매인과의 관계가 있긴 있는데 물론 이게 중요한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의사결정을 못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건 또 별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정부랑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논의하든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윤호중 위원 저는 딴 얘기를 좀 해 볼게요.

담배사업법이 언제부터 기재부 소관 법률이지요? 만들어 질 때로부터, 처음부터……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전매사업법.

○윤호중 위원 이것 전매사업법에서 남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엽연초사업조합도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엽연초생산조합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담배, 엽연초는 사실은 농식품부나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일이고 담배사업법은 복지부로 넘겨줘야지요. 기재

부가 계속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수 확보 관점에서, 세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그러는데…… 복지부에서 저한테 와서 이 얘기 해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앞으로, 기재부가 담배사업법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고 그다음에 담배판매장 거리제한을 몇 미터로 하느니 또 그걸 어느 정도 거리제한 규제 유예를 주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를 저희가 논의하고 있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전반적으로 복지부의 용역 이후에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거리제한에 대한 유예인데 정부는 어느 정도 유예를 해 주면, 예컨대 기존 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2년이든 3년이든 했을 때 그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건지, 만약에 거리제한 유예를 두면 어느 정도 기간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기본적으로 월세계약인 경우에 1년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인 경우에 2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이 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니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부칙에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박수영 위원** 아, 법률의 부칙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박수영 위원** 그러면 또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논의가 돼야 되겠네요? 6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냐 이것 논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부칙을 정할 때 이게 담배의 정의가 됐든 규제 부분이 됐든 소매인 거리제한 부분이 됐든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게 되는데 부칙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은 즉시 공포, 어떤 부분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조항별로 조금 차등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과세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로 정해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매인 거리제한과 관련해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차등화해서 규정하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만 된다고 그러면 부칙 부분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큰 틀 정하고 부칙 부분은 세컨드 라운드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냥 앉아서 주먹구구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실태 파악이 좀 필요해요, 지금.

○**소위원장 정태호**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길게 논의한 것은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경중을 놓고 보면 저희

들이 판단은 됩니다마는 소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의와 관련해 가지고 크게 보면 연초에서 나오냐 그다음에 합성니코틴이냐, 아니면 니코틴이 들어가는 것은 다 담배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담배를 정의하려면 그냥 ‘니코틴이 들어가 있는 물질을 반복해서 흡입하는 경우’, 이런 물건을 담배로 정의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덜 안전하냐 더 안전하냐의 문제 가 아니라 제가 액상 니코틴, 그러니까 합성니코틴 쪽 얘기를 들어 보면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들은 합성니코틴인데 기준의 연초에 기반한 액상 전자 담배를 만든 사람들이 합성니코틴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라는 거지요. 복지부에서는 그 가짜 액상 전자담배를 가지고, 거기의 샘플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100%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샘플이 정확한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부.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성 관련해서는 지난번 소위 때도 한번 얘기가 됐었고 공청회 때도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보고서에도 적시돼 있지만 샘플은 총 10개입니다. 천연니코틴 5종 그리고 합성니코틴 5종이고요. 합성니코틴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합성니코틴은 식약처—정부기관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로부터 제공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그것도 1mg 이하나 3mg이냐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니코틴 함량이. 그건 1mg 이하로 돼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연구 결과로 니코틴 순도는요 97~98% 사이로 다 나왔고요, 천연이든 합성이든 할 것 없이 나왔고요.

그리고 합성니코틴의 대표성이랄까 객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식약처로부터 제공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식약처가 선행 연구했던 그 연구의 결과, 연구를 도출할 때 사용했던 그 시약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이나 대표성은 그 이전 선행 연구에서 피어 그룹(peer group)의 자문이라든지 그리고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쳤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SCI에 논문도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증도 받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지금 그 액상협회에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지요? 이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네들이 추천하는 것 가지고 다 실험을 한번 해 보자라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기네들은 유해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유해성이 있다라는 것을 뭔가 설득을 해 줘야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

럴 의지는 전혀 없어요? 저는 하라 마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일단 이게 공정성 부분에서 이 연구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대답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시약은 그러면 그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논의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그것은 추가적으로 할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연구 결과가 미흡해서 아니면 이게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단계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 복지부로서는, 연구를 진행하고 또 마무리한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지난번에도 공청회 때 기재부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OECD 38개국 중에서 35개국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리고 WHO나 이런 데서도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WHO 183개국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WHO의 공식 입장이 액상형 전자담배, 그러니까 합성니코틴 그리고 천연니코틴 할 것 없이, 출처와 관계없이 니코틴은 모두 똑같이 담배로 규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오케이.

그것을 이쪽에서는 또 부정을 해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데 그런 부분도 명쾌하게 그쪽에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이 얼마가 돼요, 시중에 판매하는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어떻게 돼요? 기재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런데 지금 일반 궐련형 담배 같은 경우는 가격 4500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한 제세부담금이 3300원입니다. 그다음에 궐련형으로……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그냥 결론만 딱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소위원장 정태호** 결론만, 지금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로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아니, 기재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쪽의 주장은 지금 2만 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이게 세금이 부과되면 8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것을 보니까 세금하고 건강증진금 등등 해 가지고 한 5만 원 이상이 부과가 되던데, 그래서 다 합하니까 거의 8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담배는 궐련형으로 하니까 개수로 될 테고 이것은 몇 회로 하느냐의 문제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합성 액상 니코틴에 대한 과세 부분인데요. 천연 액상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6㎖가 그냥 일반 담배 20개비로 보고 지금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세가 되는 게 4500원 기준으로 해서 한 3300

원, 그냥 일반 궐련형 담배하고 비슷합니다.

만약에 합성 액상형 니코틴에 대해서 제세부담금을 물린다 그러면 천연 액상 니코틴하고 마찬가지로 제세부담금이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가격은……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이 사람들은 30mg으로 하나를 파는데 그게 한 2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세금을 매기면 한 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세금을 매겼을 경우에는 전혀 판매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수영 위원** 30mg은 몇 개비하고 같은 것, 몇 갑하고 같은 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기재부가 조사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가 12.5개비로 알고 있습니다. 1㎖가 12.5개비니까요 만약에 30㎖라고 그러면 그것은 12.5 곱하기 30이 되니까 거의 360개비라서 일반 담배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제가 진짜 이 문제가 하도 고민이 돼 가지고……

○**윤호중 위원** 열여덟 갑. 그러니까 8만 원이면 한 사천 얼마가 되는 거야, 한 갑에.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의 주장대로 예를 들면 가격이 8만 원이 돼 가지고 거리제한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다 문자도 받으셨을 텐데, 그런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의 피해 상태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일단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중에서 제세부담금이 약 44%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반 궐련형 담배가 74% 그리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63% 수준일 때 비교하면 가격 대비해서 부담금 규모가 적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만 원이 확 뛴다 이것은 어떻게 산출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생산 현장, 그 제조 공장에도 한번 나가 봤는데요. 나가 봐서…… 맞습니다. 천연니코틴 원액 대비해 가지고 합성니코틴이 많게는 한 40배까지도 비싸다고 하는데 제조 공장에서는 이게 담배로 규제가 되면 천연니코틴 원액으로 해 가지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시설 기준만 만들어 주면 자기네는 거기에 맞추어서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소매인협회에서도 지금 이것을 담배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로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단체는 오직 전자액상안전협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것은 분명히 맞아요. 지금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원료를 만드는 데는 2개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매상이 한 10개 정도가 되고 소매상들이 한 400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담배 전체 놓고 보면 거의 1%도 안 되는 작은 규모지요.

그런 건데 여하튼 간에 이게 지금 담배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담배 시장에서 그야말로 거의 폐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소수지만 기재부가 제대로 실태조사 돼 있는지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하고 이분들의 생존권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뭔가 타협점은 없는가 그런 고민을…… 물론 거리제한과 세금의 과세 시점들에 대해서 뭔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거리제한은 소매인,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고요.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고.

합성니코틴 담배 납품이 끊기기 때문에 소상공인 생계가 위협이 된다 이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가 필요하면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만약에 이게 부과가 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조업체가 되지 않을까? 그게 한 80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만약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포함이 되면 상당 부분이 그 원액을 천연니코틴으로 대체해 가지고 생산할 거라고, 원가가 40분의 1로 떨어지는 천연니코틴 원액으로 생산을 할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갔을 때도 시설 기준만 빨리 만들어 주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게 포함이 되면서 누가 타격을 받는지 생각을 해 보면 합성니코틴 원액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몇 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재부가 피해 규모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될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과세 시점이라든가 또 거리제한을 두는 시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를 못 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2월 달 내로 이것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아까 나왔던 그런 쟁점들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그 피해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2월 달 내로 내리자는 말씀보다는 결론을 내고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정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지 결론을 2월 중으로 내겠다는 것은 그 동안 수많은 논의를 해 왔던 입장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지금 말씀하셨던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의 소매인들의 이익이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당연하지요.

○**박성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델리케이트(delicate)하지요. 왜냐하면 결론을 딱 내려 놓고 가 버리면 나머지 쟁점이라는 것들은 사실 별 의미 없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 마음속에 다 결론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취지니까 그런 쟁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정리하면서 2월 달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큰 방향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대출 위원** 아까 말한 그 보완 방안을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에 허가받고 하는 업체는 몇 개예요, 전국에? 이 4000개 말고 기존 담배 전매업을 하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황순관** 1700개 정도……

○**박대출 위원** 이게 2배 더 많네. 2.3배 되네.

○**윤호중 위원** 필립모리스라든가 이런 수입 담배 업체들도 지금 우리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수입 계획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벌써 출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늦어지면 점점 더 커져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시작할 때도 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냥 늦추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만 문제는 생산업체든 수입업체든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데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있지만 소매점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생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가 임대차 기간이 1년씩 연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유예기간도 고려를 해 줘야 되겠지만 적어도 기재부에서 이런 안을 가져올 때는 4000개의 소매점 중에 거리제한에 관계없이 바로 담배 판매장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대개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유예기간을 부칙에 만드는 데도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위원님들 의견이 여러 가지 나뉘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상당한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까지 개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냥 늦추어서는 대형 기관들이 대거 수입을 해 놓고 이것 물량 다 소진할 때까지 연장해 달라고 또 문자 보내고 로비하고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사이에 아이들 건강은 더 해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나온 추가 자료에 관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 달을 끌어야 될 자료 같지는 않아요. 위원장님 동의하신다면 아예 다음 주에, 오늘 월요일이니까 다음 주 언제 원 포인트로 잡아서 그때까지 기재부와 복지부가 관련 자료를 모두 다 내고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정부안을 가지고 오셔요.

○**박수영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자꾸 제가 헷갈리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30㎖ 기준으로 얘기하고 8만 원이 오른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데 기준 단위가 똑같아야 돼요. 퀄런이 우리가 익숙하니까 퀄런 한 개비로 하든지…… 퀄런 한 갑이 몇 개비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20개비입니다.

○**박수영 위원** 20개비 한 갑을 기준으로 하든지, 한 갑을 기준으로 할 때 천연 액상은

어떻게 되고 합성 액상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좀…… 지금 얼마인데 나중에 담배 정의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각각이 얼마가 되고 하면 우리도 이 중에 몇 개가 파산하겠구나, 망하겠구나 하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것 지금 기준이 둘락날락하고 30㎖까지 나오니까 헷갈려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한 주일 정도 시간을 주면 자료는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때 그거 갖고 하시면……

**○소위원장 정태호** 여하튼 정부가 그 실태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면 되니까.

**○이종욱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이라는 소수의 피해라든지 생업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다수의 피해를 상쇄할 정도로 소수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는 없다 저는 생각하고. 청소년 안전이라든지 국민…… 탈세, 아까 4배가 비싸다는 건데 4배 만큼 싸게 팔고 있었다는 거고 그만큼 세금을 걷을 수 있었는데 못 걷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나 피해 보전 이런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할 건데 어떻게 하더라도 완전한 보전은 할 수 없는 거다, 어느 정도를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자체가 그 점포를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는 안고 있었다, 정부 정책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도는 그 가게 하시는 분이 이것 하나만 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팔면서 그중의 하나였지. 지금 담배 하나만 파는 그런 것하고 동일하게 소득이라든지 매출을 보장해 줄 수는, 저희들이 아무리 강구를 해도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전제하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저는 100% 동의하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국민 건강, 특히 청소년 건강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설득이 안 되더라도 여하튼 간에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희망을 꺾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이 아까, 기재부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피해를 구제해주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주는 게 좋은 건지 정도는 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것은 ‘담배법 정의가 이렇게 되니까 너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의롭지는 못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기간을 몇 달씩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도 될 수 있고 그다음 주도 될 수 있는데 2월 달 내로 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거지요. 아까 박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 주에도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하면 되니까요.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흡연가들의 권리와 이해도 감안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정부에서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하면서 내세웠던 게 그렇게 담뱃값을 높여서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담뱃값만 인상되었지 실상은 흡연율이 줄어들거나 흡연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연초 담배의 유해성이나 또 위낙 사회적인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최근에 전자담배 이런 것으로 바꾸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게 바람직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선택지의 하나로 천연니코틴인지 합성니코틴인지 모르지만 그 나름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서 흡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상치 않게 세금이 부과되면서, 담배로 포섭되어 세금이 부과되면서 가격이 크게 뛴다고 하면 대단한 부담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흡연을 권장할 일도 아니고 조장할 일도 아닙니다만 그런 부담도 해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재부가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또 하려고요?

○차규근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속행이 될 것 같은데, 48페이지에 여러 가지 담배 종류가 나와 있는데 아까 논의 과정에서도 실물이 여기 있어서 비교해 가면서 보면 논의가 좀 더 쉽게 될 것 같은데 실물이 없이 말로만 하다 보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실물을 직접 한번 종류별로 가지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사진을 찍어서 좀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입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고맙습니다. 여하튼 다음에 원 포인트로 이 문제를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전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딱 일주일 뒤인 월요일 날 소위를 열면 화요일 전체회의에 상정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것보다 더 미루게 되면 전체회의 일정을 또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 더 원 포인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일정은 좀 이따 때로 들이서 얘기하면 되니까요.

○윤호중 위원 대안을 가져오고 미리 간사분들께서 좀 협의를 해 오시면 그냥 9시, 한시간 전에 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간사 간에 협의해서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21항까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제14항부터 2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요 내용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R&D 사업을 제외하는 부분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심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기준금액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다수이셨습니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서 재정준칙과 연계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어서 추후에 재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후 정부안과 함께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은 원래 공청회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박수영 위원** 하자는 말씀이 지난번에 계셨고요. 그런데 21대 때 공청회를 해서 또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소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청회를 지난번에 했었지요, 21대 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때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 이것은 공청회를 한 적이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런데 21대 때 기재위 소위원회에서 R&D하고 SOC를 500억에서 1000억 올리는 부분은 의결이 됐다가, 그때 소위 의결된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비판 때문에 전체회의에는 상정은 안 하고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었습니다, 예타 금액 상향 조정하는 것 관련해서.

○**박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지난번 소위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던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나요?

○**전문위원 정지은** 공청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를 하신 것은 없으셨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전문위원 정지은** 재정준칙 부분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관련해서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의 입장은 어떠셔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9년도에 예타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예타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하지만 이게 각론 부분에 어떤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총량 부분에서 재정준칙을 통해서 조금 엄격하게 관리하는 부분, 이 미시·거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 상향하는 부분도 재정준칙 논의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그때 재정준칙은 공청회를 하기로 했던 거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윤호중 위원**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들어왔던 건 아닌데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합의는 안 되고, 공청회를 하기로 그렇게……

○**전문위원 정지은** 추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준칙과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 그 이유는 만약

에 우리가 500억, 1000억으로 올리게 되면 또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다, 재정이 많이 나가니까. 뭐 그런 입장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21대 때 논의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아주 크게 문제가 돼서 예타 금액 상향 조정하는 것은 재정준칙하고 같이 가야되겠다는 약간 컨센서스가 있었고요. 재정준칙이 진행이 안되면서 소위에서 의결됐던 SOC하고 R&D 금액 상향하는 부분도 같이 드롭이 됐던……

○**박수영 위원** 그래서 전체회의에 상정을 안 했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차규근 위원** 지난번 소위 때 이 안건 관련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예비타당성 기준을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그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최근 5년간 총사업비 구간별 예타 신청·선정·통과 현황, 최근 5년간 예타 분야별 신청·선정·통과 현황, 최근 5년간 예타 면제 현황—면제 사유별 분류를 해서—소위 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자료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한번 같이 검토를 해야 예타 기준을 상향해도 되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조금 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자료 요구잖아요. 그 자료를 빨리 주셔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지난번 소위 때는 1차관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바로 쟁기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면제 건수하고 조건을 보면 예타 면제한 건수가 적기는 한데 실제로 금액으로 보면 500억 제한이 무색할 정도지요. 사실 수조 원 되는 것을 예타 면제로 해서 사업을 결정했던 예가 꽤 있잖아요. 가덕도신공항도 그 예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가덕도신공항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였지요, 대략?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14조쯤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14조를 예타 면제해서 처리해 놓고 지금 500억짜리에 관해서, 500억 이상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1000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일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이러니해요. 전체 총금액으로 보면 14조짜리는 여태 예타 면제로 해서 처리해 주고 500억짜리는 재정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한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타 면제 건수와 금액 그 내용도 정리를 해서 좀 보고 그런 다음에 저도, 각 도시별로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거나 또 R&D 관련한 예타 사안에 관해서 아마 예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면제 사항만 쭉 처리해도 수십조는 더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예타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자료도 좀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윤호중 위원** 위원장님, 예타 제도 관련해서는 위낙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는데 항상 같이 막 얹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닥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예타의 기준, 500억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인상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과 예타 면제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하는 요건을 좀 늘려 줄 거냐 더 엄격하게 할 거냐 이런 논의를 분리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저도 지금 그 생각 하고 있었는데요.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면제 대상에 R&D 사업, 그러니까 대상 사업에서 R&D를 제외하는 게 있고 그다음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게 있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크게 보면 이 네 가지가 지금 보고서의 쟁점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 지난번 소위에서 크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내가 기억은 나는데……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제 기억에는 예타의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2배 올리고 그다음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것 현재 300억인 것을 한 500억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데 대체적인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타를 면제하자라고 하는 데도 공감이 다 이루어졌고요.

다만 지방균형발전을 예타 심사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자 또는 심사를 주요하게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규정으로도 그런 의지만 가지면 소화가 가능하다 해서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다 이런 데까지 의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획재정부의 의견처럼 재정준칙과 좀 연계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준칙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하지 말라고 도입하자는 게 아니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재정정책 차원에서 유지할 거냐 하는 또 다른 목적으로 제출된 것 아닙니까. 그건 별도로 논의하면 될 문제고, 기왕에 전차 회의에서 대체적인 공감이 이루어졌고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1월 달 회의에서 의결합시다까지도 얘기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야가 공감을 이룬 만큼 그렇게 정리, 쉽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정태호 예.

○박대출 위원 제가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는 법안을 낸 당사자이니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C·R&D 사업에 대해서 기준금액을 상향하자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다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을 특히 우리 기획재정부, 국회가 도외시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 실제로 도외시하고 있을 수도 있고 도외시하지 않는데 도외시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은 우리가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쓰자는 데 찬성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국민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래서 최소한 이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면서 걱정될 수 있는,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불씨는 우리가 여기에서 해소를 하고 넘어가자, 그것이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하는 길이다.

현실적으로도 만일에 이 두 문제를 연계하지 않고 우리가 상향하는 쪽만 내면 모든 언론들이 아마 우리 기획재정부를 비판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비판해 왔고.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칼럼으로도 사설로도 기사로도 지금 재정준칙 도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의 행위에 대해서 언론들이 매섭게 질타를 해 왔고 그 질타가 계속될 것이다, 그런 걱정과 오해와 질타를 우리가 애써 살 필요가 없고 또 그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연계 추진하자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이것을 별개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하는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 이해관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재정건전성을 보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제도가 서구 선진국만큼 성숙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돈이 들어갈 곳은 많은데,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줄여야 할 곳은 줄이지 못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의 미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상 사업의 기준을 상향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국가재정의 총량 관리 측면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틀과 반드시 연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서 논의를 하기보다는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통제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영 위원** 저도 사실 예타 기준 상향하자는 법안을 낸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향해야 된다는 것은 지역에서 사업해 본 사람들은 다 알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같은 것 감안하면 해야 되는데 그것만 했다가 우리 기재위 전체가 언론의 폭격을 맞을 가능성이 지난번 경험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하든지 아니면 R&D만 하든지 아니면 진짜 재정준칙하고 연계를 시켜서 균형을 맞춰 줘야 언론의 용단 폭격을 안 맞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의사일정 14항부터 21항까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22항부터 24항까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22항부터 2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추가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필수의료기금 등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주요 심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해서는 일괄적인 예타 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타 면제 사업들이 현재 나열돼 있는데요. 저희들도 특정한 사업, 특히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사업들을 예타 면제해야 된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정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

고 그러면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서 예타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시할 실익은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법에서 이것을 제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인가요?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 예,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이나 국가 정책적인 목적,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타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존 조항 가지고도 예타 면제가 가능합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황명선 위원님.

○ 황명선 위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공공이라는, 법률로써 근거를 마련해서 예타를 면제하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 그런데 만약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기관들이 들어가게 되면 SOC라든지 어떤 국가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사실은 모든 정책적인 사업들이 다 나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선별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명선 위원 그런 우려가 있으면 굉장히 크게 다양한 사업들이, 공공의료 체계와 관련돼서 굉장히 크게 방만한 사업이 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적 요소들을 만들어서 최소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들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 황명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 공공의료원들 예타 면제 또는 예타를 추진할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권역의 응급의료 체계나 아니면 보건의료체계가 부실한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예타 면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타 면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대출 위원 2004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예타 통과율이 60%네요. 10건 중에 6건이 통과됐어요. 그렇지요?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 예.

○ 박대출 위원 12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10건 중 4건이 미통과로 돼 있는데 10건 중 6건이 통과됐다는 거잖아요. 예타 통과율이 60%면 특정 분야에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 이것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예타 면제가 이미 진행이 됐던 적이 많고요. 특히나 대규모 재정 사업을 두고 획일적으로 예타 면제 조항을 넣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

가 재정총량 관리라든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획일적인 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것이 재정운용의 탄력성이나 효율성, 적시성 측면에서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2020년·21년·22년 이렇게 해서 코로나 팬데믹, 사실은 그 이후에 보면 발의안이 대부분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에 관한 예타 면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안 자체가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보면 그 이후에, 이건 정책적인 사안이라 예타 면제 부분에 관한 판단을 하겠지요. 기재부에서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기재부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아주 강력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그때도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갔지요, 실제로 여러 가지 다 포함하면.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감염병 팬데믹 현상에 관한 준비를 하는 기관, 연구시설, 병원, 감염시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전에 준비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공공의료시설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인 국민 생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다라면 저는 기재부에서 그런 면에 관해서는 판단의 준거를 조금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10건 중에 6건 했으니까 잘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공공의료 기관이나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의료시설, 병원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벗어난 형태로 전체 2022년 전후에 있었던 팬데믹이나 지금처럼 A형 독감이 창궐하고 이후에도 변종,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오는 시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제안이 있다면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예타 면제 부분들도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이 법안 사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버리면 저는 그런 것에 대응하는 부분들의 유연성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예타 면제 한 14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사실은 더 커지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법안을 보시면 예비타당성조사는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예타를 면제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공공청사라든지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처럼 어차피 건설해야 되는 것,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봤자 조사 자체가 의미 없는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금 면제가 돼 있고 나머지는 일단 다 조사는 해 본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지금 결과가 10개 중에 4개가 미통과됐다는 것은 어떤 것은 필요하고 어떤 것은 필요 없다는 거니까 이것은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보게 하는 게 맞고 원천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황명선 위원 지금 10건 중에서 4건이 미통과됐다고 했잖아요. 어떤 건들이에요? 혹시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획일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동의가 돼요. 다만 공공부문 의료와 관련된 비용 대비 편익비용 이런 형태로 보면 결국은 대도시 까지 포함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요. 다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이나 소도시, 지방소멸도시 이런 지역에 대해서 비용 대비 경제성 평가, B/C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타 면제를 제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방안들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만 획일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지방소멸이나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소도시, 농촌 지역 이런 정도로 뭔가 획일적이지 않은 방법 속에서 우리가 한번 고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전문위원 정지은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국가 정책적이나 법령 상 목적으로 이미 11개 병원을 예타 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정태호 예.

○박성훈 위원 저도 기재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자체 부단체장으로 가 보니까, 당시에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를 해 보려고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적으로 기재부의 예타 문턱을 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실제 경험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은 의료기관 신설이라든지 증설과 관련해서는 경제성 분석으로 극복할 수 없는, 편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기보다는, 지금도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의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보다는 편익이 높게 나오지 않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히 기재부가 예타조사 지침을 좀 더 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정치하게 만들고 그러한 편익들이 나올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관님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방금 박성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 100% 동감을 하고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의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정책적 목적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역낙후도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최근에 비수도권에서 예타 통과한 사업을 보면 사실 B/C가 0.3이나 0.4라 그러더라도 지역낙후도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AHP가 0.5 이상 나와서 예타 통과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B/C 분석은 3분의 1 정도,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황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아주 낙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타를 하더라도 그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훈 위원 방금 차관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 입장에서 경제성 분석보다는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AHP라든지 이런 비중들을 조금 더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총량 관리는 재정준칙을 통해서 가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한,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충분히 토론이 됐고요. 지금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

면제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역시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지은**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권의 147페이지입니다.

김주영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148페이지에 지난 소위 심사 요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한정된 법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국가적 차원에서 서울과 인접 도시 간 광역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해소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도 그때 결론을 못 내렸던 사안인데 정부 입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접경지역에 기초지자체 15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인구 50만이 넘는 게 사실 딱 3개 지자체로 한정이 됩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 하실 때 관련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 3개를 찍고 여기서 하는 특정 광역철도를 찍어서 이것을 예타 면제를 한다는 것은 일부분에 한정된 부분이라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주영 의원 취지하고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보류해 놓고.

26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지은** 158페이지입니다.

제26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소위 때 심사가 이루어졌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이 부분도 만약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철도가 들어가게 되면 도로, 항만, 수자원, 정보화사업,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다 열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호중 위원 지난 회의 때 다 충분히 의논한 것이지요?

○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렇지요.

이것도 잠정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권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정건전화법안과 28항·29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권의 1페이지입니다.

27항 재정건전화법안 제정안과 28·29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입니다.

제정안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일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사 요지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정안과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재정준칙의 실효성 그리고 국가채무 범위 및 준칙 수준과 관련해서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중검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입법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튜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환경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목표 설정이 오히려 정책 집행을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재정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서 소비·투자 증대가 세수로 이어질 경우에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준칙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정준칙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국가재정의 탄력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지만 예외 규정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중검토 의견으로는 명시적인 재정준칙보다는 정치적인 책임성 확보를 위한 암묵적 재정준칙의 실질화가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채무 범위 및 준칙 수준과 관련해서는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수지준칙뿐만 아니라 채무준칙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재정준칙의 엄격성과 유연성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국가채무 기준을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함하는 D1으로 설정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관리재정수지와 관련해서, 채무준칙과 관련해서 그 기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공청회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 재정준칙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21대 때 정부안으로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같이 고려한 법안을 제출했었는데 그

때 모든 것을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라 통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21대 후반에 다시 의원입법안으로 조금 더 탄력적이고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정준칙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기재위 소위에서도 잠정적인 합의 까지 갔지만 의결되지 못하고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박대출 의원님 안으로 다시 제출돼 있는 상태고.

저희는 전반적인 재정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재정준칙을 도입하게 되면 재정운용에 경직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최초 제출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재정준칙의 예외로 추경 편성할 요건이 된다 그러면 재정준칙 적용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재정운용에 탄력성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미를 해서 그동안 많은 걱정을 하셨던 재정운용의 경직성 부분이나 재정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불식시켰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 부분은 워낙 많은 논의를 해 왔던 사안이고 다시 또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야 될지 참 의문이 드는 거고.

다만 아까 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번 소위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이 공청회도 21대 국회에서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그래도 지난번 소위에서 공청회 여부를 결정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 중심으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네요.

**○김영진 위원** 저는 사실 21대에 비해서 여러 가지 바뀌어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 조건도 변경이 돼 있고 또 전체 경제 상황도 저성장이 쭉 진행될 것이 예측되는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준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문제를 너무, 찬반의 문제를 논의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열어 놓고 논의를 다시 한번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좁혀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는 예산의 편성권 자체가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 있고, 또 결정적으로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부가 예산준칙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안을 하고 그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범위는 정부에서 증액에 대한 동의를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면에서는 그 통제 권한이 현재는 정부에 있는 거거든요. 법으로는 예산준칙이라고 하는,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돼 있지 않지만 제도와 형식과 내용으로 보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추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지요. 추경도 여러 가지 추경 요건에 맞게끔 해서 진행을 했지 그렇지 않은 경우 추경을 했던 경우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도 여러 가지 다른 부분과 같이 엮여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넓게 얘기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윤호중 위원** 지난 회의에 저는 없어서 논의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21대 때도 공청회를 했었고 뒤에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관련해서도 21대 때, 20대 때도 했었고요. 공청회를 쭉 해 왔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전체회의 차원이 아니라 소위원회가 공

청회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위원 대한민국 국회가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이 50%씩 바뀌기 때문에 잘 몰라요.

○윤호중 위원 알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어와…… 경제 상황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공청회를 한번 다시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지요. 그러면 일단 이건 공청회를 하는 걸로 하고……

○박수영 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예타 면제 부분하고 이준칙하고가 서로 얹힌다 안 얹힌다, 더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또 여론의 질타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저번에도 중지됐던 게 있으니까 2개를 같이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둘을 묶어서 같이 처리를 해 버리든지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반이 바뀌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도 몇 분만 공청회 참석했지, 아무도 참여 못 했던 것도 있으니 2개를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이게 재정준칙하고 예타 제도개선하는 것하고 같이 공청회가 가능한가요? 내용이 그래도 같은 결이기는 하지만 또 주제 자체가 각각이 좀……

○박수영 위원 국가재정법 선진화 대책이나 전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황명선 위원 사회적경제기본법도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건 이렇게 하지요. 일단은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예타 면제까지 포함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해 놓고 구체적인 진행,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28·29항은 잠정 보류하고 공청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제31항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다 한번 논의는 했던 거니까, 지난번에 공청회를 소위에서 하기로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것도 공청회를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하고 보류해 놓고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3권의 1쪽입니다.

32항·33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액의 5% 이상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그리고 전년도 대비 국가 R&D 재원배분 축소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총지출 또는 예산편성액의 5% 이상 반영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해민 의원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총지출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고, 황정아 의원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보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국가 핵심기술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가 예산을 특정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분야 간 형평성 문제라든지 재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밖에 황정아 의원안의 경우 예산안 편성 시에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예산 외에 각 기금에서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지금 이게 32·33항 2개 보고하신 거지요, 한꺼번에?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산편성액의 5% 이상 편성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희들은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R&D를 총지출의 5% 이상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사회복지나 교육이나 환경 부분은 그러면 총지출의 얼마가 되느냐 국방 분야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특정 분야를 총지출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딱 경직적으로 정해 놓게 되면 다른 분야 예산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R&D 분야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봐서 증액, 감액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아예 저것까지 설명해 주시지요, 축소 시에 국회 동의를 받는 것까지.

○전문위원 정지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년도 대비 국가 R&D 재원배분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규모 및 이유를 제출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 R&D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년도 대비 국가 R&D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국회가 그 규모와 이유를 제출받아서 적절성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동의나 승인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R&D 예산을 편성한 이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게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면 증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감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단계가 아닌 정부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R&D가 감액될 경우에 국회에 와서 보고하라는 건 조금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내용만 보면 법정 의무지출을 신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차관님 말씀처럼 이러한 요구가 타 분야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복지 분야에서도 이런 식의 요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교육도 당연히 이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타 분야하고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지,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누가 감축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세입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특히나 사실상 법정 의무지출로 받아들여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해민 의원안 중에서 R&D 재원배분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 이 재원배분 계획의 의미가 저는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는지도 법 내용을 봐서는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R&D 사업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년도 대비 규모 축소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할 경우 R&D 예산 규모는 무조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법으로 R&D 예산 증액을 강제하고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정운용은 탄력성과 효율성, 재정 배분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 두게 될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차규근 위원** 박성훈 위원님 의견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정운용의 원칙 등에 비춰 봤을 때 이런 법안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과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 기술력. 그런 것 관련해서도 지금 진보·보수 언론을 떠나 가지고 과감한 투자, R&D 투자나 이런 데에 국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구개발 비중이 4.7, 4.9, 4.9, 거의 5%에 육박하다가 2024년 4.0 그다음에 2025년 4.3 이렇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도 5%를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내용, 축소 시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든가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이 부분은 그런 의견인데 앞부분 같은 경우는 만일에 5%로 했을 때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도 문제의 소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기존에도 국가가 이렇게 5%에 육박해서 계속 R&D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이게 법에 규정됐을 경우에는 이공계 인재들이 예측 가능하게 더욱더 많이 R&D에 관련된 데 종사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이득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적인 고려하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욱 위원** 차관님, 지금 R&D 5%라는데 이런 식으로 몇 프로라고 법이나 시행령에 담겨 있는 사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교부세, 교부금 말고 특정 분야를 이렇게 법정 의무지출화시키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전에 문화예술 분야 1% 이런 이야기 있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건 정책 방향으로서 그걸 목표로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종욱 위원** 정책 방향으로만 돼 있지 이렇게 규정화돼 있지는 않고.

저도 그렇습니다. 현재 4.9%니까 5%, 비슷하기는 한데 저는 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4%, 3%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걸 숫자로 규정하는 순간 결국 모든 상임위나 모든 부처에서 이 싸움으로 번질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차관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그 나라 총지출의 얼마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한 국가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총지출의 몇 프로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같이 내국세에 연동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나라도 일본, 일부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결국 그 나라도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중요한 게 전체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신규 사업이 얼마나 담겼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조금 줄더라도 신규 사업이 얼마나 많이 담겼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아닌 설계비가 담기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2년, 3년 지나면 그쪽 부분은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완공되게 되면 또 일부분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 어떤 총량 규모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도 뭐 합의가 안 되니까 보류하고 넘어갈까요?

○ 김영진 위원 잠시만요.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는데, 아까 전차에서 나왔는데 올해 국방비 예산이 대략 9%, 61조 정도 되는데 GDP 대비 몇 프로 정도 되지요, 국방 분야?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 저희가 한 2.4%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 김영진 위원 트럼프가 5% 하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방식이 몇 프로, 몇 프로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거하여 주둔국 관련한 여러 가지 주둔 비용을 또 협상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5%를 좋아하는 것 같아 가지고. 유럽보고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GDP의 5%를 국방비에 써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걱정입니다.

이 점 몇 프로요, 지금 GDP 대비?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 지금 저희가 GDP 2500조 중에 올해 기준으로 62조 거든요. 그러면 2.4% 그 정도 됩니다.

○ 김영진 위원 퍼센트 잘 지켜 주셔야 할 것 같네요.

○ 소위원장 정태호 32·33항 보류하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지은 3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폐이지는 10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예산 배정 제도에 대해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1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당해 연도 예산 확정 후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해서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수시배정, 배정유보·집행보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시배정, 배정유보 등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는 확정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집행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며 예산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자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예산 모두를 배정하고 집행보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량으로 수시 배정 또는 배정유보·집행보류 대상사업으로 지정해서 해당 사업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수시배정 등의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보고가 아니고 사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부의 예산집행 권한

을 침해한다기보다는 수시배정 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제공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반면에 수시배정 등 지정요건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집행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할 경우에 효율적인 집행에 제약을 초래하거나 예산 낭비의 초래 우려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답변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기본적으로 예산의 배정과 집행유보는 행정부 내부의 어떤 집행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부 내부에서 집행을 하고 다음 연도에 결산을 통해서 예산배정이나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모든 예산을 배정하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 배정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배정의 요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예산배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배정을 안 합니다, 예산집행을 하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 4분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배정의 기본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모든 예산배정을 해 버리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의 우려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들은 집행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배정이나 집행유보와 관련된 부분은 행정부 내부의 어떤 집행 절차의 하나로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통제나 심사는 다음 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엄격히 봐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 차관님, OECD 국가 중에서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예산을 모두 배정해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거나 법에 규정하는 국가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건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예산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약속한, 예를 들어 국회하고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정치적인 요구사항들을 일정 부분 담을 수밖에 없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걸어 두고 예산에 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사전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 그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재정의 어떤 통제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실제로 예산배정이나 운용을 해 봤던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법안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내용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이러한 법이 사실상, 물론 김영환 위원님 앞에 계셔서 제가 말씀드릴……

○ 김영진 위원 저는 김영진입니다.

○ 박성훈 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 김영진 위원 깜짝 놀랐네.

○ 박성훈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결산심사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사후적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분이요.

○ 김영진 위원 제가 김영환 의원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법안에 이 조항을 발의했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사실은 2023년, 2024년에 불용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도 그대로 돼 있네요. 15페이지에 보면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제5항에 지침으로 돼 있어요, 법령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입 징수실적이 당초 세입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보류와 배정을 집행하지 않은 거지요. 불용 처리를 한 거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입세출과 예산안의 결정 권한이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사실 권한이 침해받는 사안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환 의원의 생각으로, 제 생각으로는 실제 국회에서 결정됐던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3개월 전에 배정을 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아니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것을 공개하라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취지는 아마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것을 법률적인 사안으로 발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회의에서 전체 토론이 있으면 본래 의미를 한번 발의하신 분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회계연도 관련한 3개월이라는 조항은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불용이 그렇게 과하게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예산안의 결정 권한을 국회에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계속 침해받는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잘 지켜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의견 한번 들어 보시지요.

○ 소위원장 정태호 이 법안은 기재부가 자업자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국회에서 이미 심의 의결한 것을 기재부가 그때 세수결손이 많이 나오니까 자의적으로 예산을, 우리 국회에서 볼 때는 의도적으로 불용 처리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 실제로 그랬는지 오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재부가 자업자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게 국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인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예산배정에 관한 부분을 국회에 3개월 전에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든가 강제 조항을 둔다든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

는데 그런 조항을 만든다든가 그런 대안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떠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일단 23년과 24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배정 문제 이전에 그때 대규모 세수 부족 문제가 전제됐던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여러 번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제로 내년도 세수 추계할 때는 예정처까지 포함을 시켜서 7월이나 8월 달에 하겠다는 여러 가지, IMF의 모델까지 넣어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제고가 된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문제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입과 연동되어 있는 교부세, 교부금을 어느 정도 조정한 것 외에 다른 사업들을 강제적으로 불용하든지 인위적으로 배정을 안 하든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도 보류하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포함 항목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대응지방비 규모를 객관적으로 예측·관리하고 국회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주체별로 재원배분은 정해지지 않으며 대응지방비 규모 및 증가율 등에 대한 전망치를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3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기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분야별 총대응지방비 소요추계서’ 외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안 제출 시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비 부담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측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대응지방비를 산출해서 보고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것은 분야별 어떤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대응지방비 규모가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나오겠지만 다음 연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고보조금 규모가 분야별로 열마고 여기에 대응되는 지방비가 얼마인지는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93조인데 여기에 대응되는 지방비가 40조라는 것은 분야별로 저희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계열을 하나 더 뛰어넘게 되면 저희가 국고보조금 산출도 안 되고 당연히 대응지방비도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N+1년도는 모르겠지만 N+2년도나 3년도는 대응지방비 추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해 달라는 건데 현재 하고 있는 게 분야별 지방비 대응 내역은 추계를 해서 저희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는데, 개별 세부사업이나 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별로 243개 지자체의 대응 내역을 다 제시를 하라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없습니다. 20대 때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됐다가 이게 물리적으로 어렵구나 그래서 국고보조금 규모가 분야별로 열마고 여기에 대응되는 전반적인 대응지방비 규모가 대략 추계해서 추계가 얼마인지를 제시하는 걸로 그때 논의가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부분도 물리적으로 243개 지자체의 대응지방비를 세부사업뿐만 아니고 각 내역사업별로 하나하나 구분해서 제출하는 것 자체가 정확한 금액을, 이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정부 의견에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박수영 위원 예.

저도 지방에서 부지사를 오래 했는데 정부에서 확정된 다음에 지방의 지방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정부예산 제출하면서 이걸 같이 내라고 하면 지방은 대책이 안 서서 정확한 숫자를 낼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보류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지금 법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래서 20대 때도 그냥 분야별 전반적인 대응지방비 추계를 내는 걸로 이 법 규정이 들어갔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분야별은 모르겠지만 개별 사업에 대해서 대응지방비를 산출한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개별 사업별로는 추계치가 아닌 정확한 대응 내역을 내야 되는데 이게……

○소위원장 정태호 숫자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박성훈 위원**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다 받아야 되는데 아마……

○**김영진 위원** 제가 보니까 제출하신 박용갑 의원님도 자치단체장 출신으로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본인이 자치단체장으로 예산을 운용해 보면서 예측하지 못한 지방비 대응이 내려오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많지요. 여러 가지 65세 이상 노인에 관한 부분들을 증액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지방비 부담이 다 돼 있으니까, 전체 예산은 돼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예측 가능성은 높여 달라는 취지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분야별로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지방교부세율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들을 우리가 한번, 그동안 여러 가지 개정안을 냈는데 근래에 와서는 지방교부세율 19.24에서 20.24 올리는 부분에 관한 논의들이 중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논의를 폭넓게 해 보는 게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개별 사안, 사안을 243개 지방자치단체 다 내라, 아니면 여기에서 기재부보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 예고해 달라 이건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예측될지도 모르는데, 예산도 결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체 교부세율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소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하실 말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김영진 위원님 재정 분권 관련해서 교부세율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율뿐만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이 두 개를 사실은 같이 놓고 어느 정도 거버넌스 구조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지자체하고 교육 지자체 간에 법정전입금, 전출금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 교육교부금뿐만 아니고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서 일반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일단 이 부분도 재정 분권을 논의할 때 같이 논의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재정준칙 관련한 것 할 때 그런 것 포함해서 한번 넓게 논의해서,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부금 관련한 문제가 한 이삼 년 동안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것 잘 기록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전체 방향 스크린하는 게 필요해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35항 보류해 놓고요.

의사일정 제36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6항입니다.

26쪽입니다.

개정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자문사항에 금융공공기관의 금융

상품 점검·분석 및 부채 관리,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8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중 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 금융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이 18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잔액이 23년 말 기준으로 1868조 원에 이르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 또한 23년 말 기준 10조 원가량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금융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사항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문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금융공공기관 및 정책금융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은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융자·출자 외에 각 금융공공기관의 자체 상품에 대해서는 예산·기금상의 지출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국가재정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적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공공기관의 부채는 현행법상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크게 두 가지인데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옮리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논의 안건의 하나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어떤 부채, 정책금융까지 이제 좀 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옮길 실익은 적다고 봅니다.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이 기재부2차관이고요, 정부위원들은 국장급 아니면 1급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자문 형태에 불과한 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할 실익은 적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금융공공기관의 금융상품과 부채 관리라고 그랬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을 하셨지만 현재 국가재정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 부채인 D1, D2, D3에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채는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공공기관의 부채를 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개별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정책금융의 어떤 공급 현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부 지출로 잡히는 보증이나 어떤 대출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수은·산은·기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금융 부분까지 저희가 통제하는 거는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나 관리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차관님,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인 재정정책자문회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보면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옮기는 거잖아요. 단순 자문위원회인 2차관 주재의 위원회가 법률상 위원회로서 법적 지위를 차별화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영광이겠지만 그게 크게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박성훈 위원** 단순 자문위원회를 법으로 규정한 경우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기재부는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기재부에서도 없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리고 재정정책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그 위원들이 광역 자치단체의 장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이라서 그게 레벨이 다르지만 여기는 고공단 나급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법률로 규정할 실익은 적다고 봅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포함될 수 있는 범위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융자나 출자만을 규정하면 모르겠지만 이거 외에도 각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 상품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만일 이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각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상품까지도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 법을 만든 취지에 부합을 할지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예산·기금상 지출 사업이 아닌 사업들마저도 이 법에 의하면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해당 내용의 자문이 저는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마 그 법안을 발의하실 때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조금 더 전전하게 상품을 관리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금융공공기관의 리스크 관리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BIS 비율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은·산은·기은같이 금융위원회나 또 기재부도 다른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무 부처가 있는 데서는 정책금융상품이나 규모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고, 저희 재정 당국에서 일률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금융공공기관들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이 또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박성훈 위원** 금융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금융위원회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일률적인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질문 하나.....

아까 부총리가 하시는 게 재정정책자문회의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부총리 주재하시는 재정정책자문회의하고 여기 차관님이 하시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하고 기능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재정정책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크게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의결 이전에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8월 달에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거쳐서,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안 편성지침과 다음 연도 예산안 그다음에 국가재정운용계획 그 3개가 주요 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가장 큰 부분이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장기재정전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침과 기준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기타 저희가 민간 재정 전문가들로부터 재정의 역할이 됐든 준칙이 됐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들을 때 이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개최를 해서 의견을 공식·비공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자문회의는 전체적으로 큰 국가계획을 확정할 때 하는 거고 차관님이 하시는 이 회의체는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장기재정전망을 포함한 예산 관련 그런 실무 연구업무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리고 인원도 재정정책자문회의는 70명으로 엄청 큩니다. 거기에 자치단체의 장, 모든 부처의 차관들 다 들어와 있고요, 민간 위원들까지.

○이종욱 위원 유동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정책금융이라든지 금융상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재부 차원에서 부총리가 따로 쟁기고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희가 F4 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 금융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은·기은·수은 같은 기타공공기관하고 준정부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는 8개의 금융형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직이나 인력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경영관리 차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금융공공기관이 하는 정책금융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부총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쟁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차관님, 유동수 의원이 법안을 내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지금 시행령에 있다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정일영 위원 그걸 법에 근거를 두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정일영 위원 유동수 의원하고 얘기는 안 해 봤지만 이 취지는 지금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법에 올려서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뜻 같은데요.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여러 가지 할 일들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보통 1

년에 몇 번 열립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많이 열릴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릴 때도 있고요 적게 열릴 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열릴 때도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그때 주로 논의되는 건 어떤 것들이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외국의 재정 동향이랄지 최근에는 저희가 올해 장기재정 전망을 발표해야 되는데 장기재정전망을 어떤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발표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준칙이 핫이슈가 될 때는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수지채무가 맞냐 채무준칙이 맞냐 그다음에 재정준칙의 예외 조건은 어떤 게 맞는지? 이게 의견수렴과 자문의 형식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안건에 특별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차관이 위원장이고 교육·과기·행안·산업·복지·노동부 거기의 고위공무원단이니까 국장급이 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국장 또는 실장들입니다.

○**정일영 위원** 국장 또는 실장?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은 시행령이나 어디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어느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기재부에서 임명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닙니다. 당연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처가 있고요 그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처를 또 참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2차관이 위원장으로 돼서 여기서 자문 결정이 되면 부총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이 아까 재정정책자문회의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프로세스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여기서 논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요?

○**정일영 위원** 예, 결론이 나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런데 결론이라기보다는 여기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의견수렴과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요. 뭔가 회의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런데 정책적으로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는 하나의 파트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확정을 짓는 단계를 거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 회의가 아까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도 열리고 이렇게 죽 열리는데 회의 안건이 있고 그것이 결정, 어쨌든 안건이 있으니까 위원회의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결론이라기보다는 사실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열다섯 분의 다양한, 지금 현재는 열두 분이지만 열두 분의 민간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결론 낸다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그걸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런데 이게 가능 자체가 의견수렴과 자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다른 의견까지 포함해서 확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묻는 건데, 할 일 중에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추진 및 제도개선’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정일영 위원 재정수입 확충이 잘 안 되니까 세수결손도 일어나고 등등 거기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지. 그래도 기재부의 2차관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전문가들 모이고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추진 및 제도개선 이런 게 있으니까 제도개선, 재정수입 확충 이거에 대해서 뭔가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끝 그러면 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유동수 의원이 이것 법으로 올리고 금융 관계까지 포함을 해서 제대로 된 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게 국가경제 전략 마련하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내놓은 것 같아요.

위원회가 시행령에 있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은 충분하지가 않네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논의된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37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37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5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을 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한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부처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총액예산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국회가 부처별 지출한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지출한도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서 국회가 부처별 지출한도와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지출한도 준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액예산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전적으로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경우에 정부와 국회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짧은 예산안 심의 기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부처별 예산요구서 국회 제출이 정부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처음 예산안편성지침을 3월 말까지 통보할 때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조항에 있었던 것은 저희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게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에 10월 2일까지였는데 그때 저희가 이것을 9월 초로 한 달 앞당기면서 이 조항을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안편성지침도 4월 말에서 3월까지 앞당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예전같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저희가 4월 말까지 통보할 때는 지출한도를 같이 부처에 통보를 할 수가 있었지만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당겨지면서 사실상 지출한도를 여기에 맞추기는 시간상, 한 달 정도의 캡이 있어서 이것을 따르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요구서 제출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도 한다는 이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총액배분 자율편성이라는 부분 이것은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지출한도를 배분하고 각 부처 장관이 그 지출한도에 맞춰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부분. 그래서 예산안 심사 과정이 있는데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예산요구서와 지출한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나갈 때는 예산편성과 심의가 혼재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요.

○김영진 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 예결위 회의 때 장관님께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시차가 좀 있었기도 하고 각 부처별 예산요구서에 대한 개요라든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실 국회에 보고해서 보고 심사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한 삼사년 전부터는 사라졌어요, 각 부처의 실·국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금액으로 어떤 목적으로 편성해서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애, 여기 평가는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각 부처에서 초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성이 됐고 어떤 것은 수용이 되고 어떤 것은 수용되지 않고 금액은 어디는 많이 감액되고 어디는 증액된 형태로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유는 그 사업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돼서 효과를 발휘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뭐였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면서 예산에 대한 수요들이 각 부처의 실·국에서 나왔던 건지를 좀 판단해 보면 예산안 심의 결정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

고 서로 정보를 잘 알면서 심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요청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러면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법률안을 낸 것 같아요.

그 취지도 맞는데 저는 법으로 이것을 규정할 것인가?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했는데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의무사항으로 하면 뭐 좋을 것 같지 않더라도 국회가 예산편성 시기에 내용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서는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좀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분요.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차관님, 부처별 지출한도하고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할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각 부처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해당 부처 의견에 담기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정과제나 국정방향이 일관되게 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정 당국하고 협의·조정하는 과정에서 국정철학이 담기고 정부 전체의 방향과 부합하는 예산들이 담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단일 정부의 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이 되고.

사실 라인 미니스트리(line ministry)에서 저희 재정 당국으로 제출되는 부처 요구안을 보면 중구난방으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정방향과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막 나갈 경우에는 정말 오해를 살 여지도 있고 이게 정부의 통일된 의견으로 잘못 비쳐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많은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게 정부 전체의 단일한 정부안입니다’ 하고 대외적으로 릴리스(release)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박성훈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건 국정이념을 담을 수 없다,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담을 수 없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이게 공개될 경우에는, 각 부처가 이해관계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최대한 반영하거나 달래기 위해서 정부예산안에 담을 수밖에 없는, 부처 요구안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그 요구사항이 부처별로 반영 비율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정책 당국에서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맞습니다. 예산요구서가 공개될 경우에 사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출한도 이 부분은 예산안편성지침과 같이 통보를 하든 따로 통보를 하든 3급 비밀입니다. 그래서 부처별 지출한도는 어차피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차관님, 지금 통상적으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업부 같은 데는 몇 퍼센트, 국토부 몇 퍼센트 이렇게 지금 지출한도가 나갑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부처별로 지출한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각각 다르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각각.

○**정일영 위원**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나갑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보통 금액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일영 위원** 금액으로 나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금액으로 나가면 전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대비 증가율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정일영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등등, 그러니까 쭉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업부든 문화체육관광부든 국토부든 이런 데서 기재부에 예산요구서 제출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제출해 달라 그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최기상 의원이 왜 이런 안을 냈나 생각해 보면 지금 예산심의를 국회에서 하는데 심의가 사실상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 어딘가도 세미나인가 토론회인가 뭐 붙어 있던데 헌법상 보장된 국회 예산심의권이 제대로 행사가 안 되고 나중에 시간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예산심의 해 갖고 의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났지만 그때도 보면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소위를 하고, 소위에서 감액 결정하고 증액을 정부 측에 알리고 다시 정부 측 의견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짧고 촉박하고 그러니까 정부 의견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면서 11월 29일 그때 다 되고 또 12월 2일이 금방 주말 다음에 되고 이러면서 너무 촉박하고 자료가 부족하고 심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기재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필요한 자료들을 턱탁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하는 거야. 제출 안 한다 해 가지고 맨날 자료 가지고 투닥투닥하고, 왜 안 하냐 그러면 거기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예산심의는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해에 그건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면 각 중앙부처,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에 제출한 내용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을 해 주면 국회 소관 상임위든 예결위에서 미리 검토하고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기재부에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면 기재부에서 예산심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고 자료제출을 재깍재깍 빨리빨리 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가 보면 계속 시간은 가라, 법정시한은 도래한다, 그러면 국가의 예산부수법안 등등 해 가지고 정부안대로 통과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국회법 개정안 등등 냈는데 거부권 때문에 그게 또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의 시작이 자료제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의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권한을 갖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기재부에다가 예산요구안을 냈어요. 그것이 국회에 오고 국민한테 발표된들 무엇이 문제냐? 나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국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하고 효율적으로 법정기간 내에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도와주고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게 뭐 엄청난 비밀도 아니고 그것이 공개됐을 때 무슨 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기재부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원칙도 없이 기재부 예산 실의 막강한 파워로 중앙부처의 예산 요구가 그냥 짹둑 짹둑 잘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투명하게 각 부처에서 기재부 예산실에 낸 자료를 국회로 제출하고 국회에서 같이 심의하는 데 그 자료를 참고로 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이것을 그냥 숨겨 놓고서 예산실에서만 보고 예산실에서 다 정리한 다음에 국무회의 거치고 그래서 정부 입장으로 국회에 통보 오면 다 늦게 그것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는 자료 요구하면 자료는 제대로 안 내놓고 시간에 쫓겨 가지고 보통 그냥 예산부수법안 하고 의결되고 이게 안 맞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출한도, 여러 중앙관서의 장들이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39페이지 보시면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다음에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여기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한테 통보한다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다음에 31조 ‘예산요구서는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장관, 기재부는 보안을 지킬 수 있고 국회의원은 보안을 지킬 수 없다 그런 전제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니, 보안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위원장 정태호 그건 보안의 문제는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런데……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기술적으로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말씀하시는……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29조하고 31조인데 29조는 부처별 지출한도고 31조는 예산요구서가 되는 거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1항이 3월 31일까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29조는 ‘통보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거고 31조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소위원장 정태호 이게 뭐가 문제예요? 보안의 문제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첫 번째,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할 때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보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부분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지출한도를 3월 말까지 같이 주는 게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원래는 저희가 예산 순기상 4월 말……

○소위원장 정태호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됐고. 아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31조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31조 같은 경우는 정부 내부의 프로세스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처에서 생각하는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한테 제출을 하고 6월·7월·8월까지 두 달 반의 기간 동안 재정 당국하고 협의·조정 그다음에 관련된 관계 부처와의 유사·중복 문제나 이런 이해관계자들 조정을 해서 저희가 8월 말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의 단일안으로, 최종적인 안으로 국회 심사를 위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행정부 내부 과정에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는 이 부분은……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면 한 7월까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국회가 예산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런데 예산요구서라는 것 자체가 이게……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그것을 국회에 줄 수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차관님 말씀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이게 지금 행정부 내부의 프로세스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이미 다 확정돼 가지고, 예산안이 거의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런데 이게 각, 예를 들어서 복지부장관이 생각하는 복지부의 예산요구서 자체가 만약에 대외적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행정부의 단일안으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생각하는 것과 복지부와 관련된 교육부나 재정 당국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협의·조정을 거쳐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의 단일안이 확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국회에 심사를 요청드리는 것도 정부의 단일안을 요청드리는 부분인데……

○소위원장 정태호 지금 헌법상으로는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갖고 있지만 전통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충

분히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살려 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정부 내에서 예산 요청 단계에서부터 정부안 확정 단계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국회가 충분히 알아야 예산심의를 충실히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정부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것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장님, 저희가 2014년도에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에 충분한 심의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상에 원래 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한 달 앞당겨서 9월 2일 날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 같은 경우에도 5월 말에 예산요구서를 받게 되면 6월·7월 그리고 8월 중순까지 두 달 반의 정부 내부의 협의·조정 과정이 있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이것을 받게 되면 9월·10월·11월 석 달 간의 예산심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4년도에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 심의기간을 저희가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제출함으로 해서 충분한 심의기간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심의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의할 수 있는 자료의 문제니까, 정보의 문제니까.

이것은 정부가 여하튼 간에 수용 불가라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보류하고 일단 넘어가지요, 뭐. 결론이 안 나는데 뭐……

**○이종욱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출한도라든지 부처가 제출하는 요구서도 확정 내지 불변이 아니지요? 계속 바뀌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 숫자를 주었을 경우에, 정부가 최종 수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데 과정 수치까지 설명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좀 알려 드리기 힘들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관련해서 아까 전에 차관님께서 부처별 지출한도, 예산요구서 공개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박성훈 위원님께서 그 취지가 뭔지 물어보셨고 답을 하셨는데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부처에서 요구될 수가 있고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법무부에서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중앙부처의,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할 때 국정철학을 감안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기재부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 표현 자체가 오히려 중앙정부의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약간 외면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남기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방금 차규근 위원님 경험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일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재원배분의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국정운영과 관

련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부처에서 생각하는 재원배분의 우선순위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전략적으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뒤집어서 오는 경우도 사실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 자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과 정부 전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게 다른 경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부처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겠지만 일부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호중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국회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대화를 거치는 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개정안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데 개정안대로 해 보자라고 계속 고집하기도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요.

30조 같은 경우에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서면으로 보고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면 회의에 보고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대부분 다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냥 서면 보고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 오히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편성지침을 예산위원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각 중앙관서로부터 예산요구서 들어온 것들도 적절한 시점에 국회와 공유하는 것이 예산심사를 심도 깊게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보류해 놓고요.

다음은 38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유상대 부총재 오신 것 같은데 들어와서 진술하실 게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0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되 한국은행의 예산 중에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예산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 승인 대상의 범위를 현행 모든 급여성 경비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사실상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급여성 경비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높일 경우 우수한 인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은행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서 확정된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국회 제출 규정 도입하는 것은 최소한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사전 승인 대상의 범위를 모든 급여성 경비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한 사전 통제장치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한국은행의 급여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확정된 전체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측면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의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우선 이 급여성 경비에 대한 정부의 승인 조항이 생긴 게 97년도에 법 개정을 하면서, 그때 한국은행의 방만 경영이라든지 셀프 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한국은행의 경비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된다는 법 개정이 있었고요.

2003년도에 이 부분을 통화신용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은 빼고 급여성 경비로 사실 축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도 미니멈, 통화신용정책과 관련이 없는 급여성 경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도 발권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공공성과 투명성은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한은법 제100조에 보면 한은의 손실이 날 때는 기본 적립금으로 이것을 메꾸고 적립금으로 매꿀 수 없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고 손실 보전 조항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아주 미니멈한 통화신용정책과 관련이 없는 이런 급여성 경비에 대한 지금과 같은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혹시 한국은행에서 하실 얘기 있어요?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없어요?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예.

○**소위원장 정태호** 괜히 눈치 봐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한국은행 의견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지금……

○**정일영 위원** 어쨌든 읽어 봤어요. 이 자료에 있는 것 말고 얘기……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정일영 위원** 읽어 봤어요. 한국은행에 좋은 것은 받겠다는 거고 나쁜 건 안 받겠다는 심풀한 의견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정일영 위원** 한국은행이 독립된 중앙은행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정일영 위원** 저도 이것 몰랐는데, 그런데 기재부장관이 가장 아픈…… 모든 급여성 경비를 승인한다는 게—이건 저는 처음 알았네요—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인건비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 법안에는 모든 급여성 경비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건비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 그런데 그 모든 급여성 경비에 이것 말고 또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없습니다.

○**정일영 위원** 없잖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그게 그건데. 뭐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아프잖아요, 깎으면. 그러면 이것을 기재부에서 사전 승인을……

이것은 ‘모든’이니까 직원들 다 포함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병도 의원의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조금 이상한데, 무슨 얘기냐면 사전 승인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제출 규정을 도입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법 개정안 해석이. 그리고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에서 누가 오셨지요? 아까 누구……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부총재 유상대입니다.

○**정일영 위원** 부총재님이 딱 가운데 앉으시지 왜 뒤에 앉아서……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이 건만 있어서요.

○**정일영 위원** 어쨌든 한국은행 예산이 이게 공표가 안 됩니까?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예산 자체……

○**정일영 위원** 예를 들어서 2025년 예산이 언제 확정됐습니까?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작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작년 알지요. 작년 언제요?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작년 12월 말경에 확정……

○**정일영 위원** 12월 말?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공표가 안 됩니까?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예산 자체는 공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포함한 경비예산은 국회에는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승인한 예산.

○**정일영 위원** 아니, 그것도 참 희한하네. 모든 기관의 예산 자체는 정부……

차관님, 정부 부처 예산 다 발표되지요, 모든 행정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현법상 기관인 현법재판소, 대법원, 감사원, 선관위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예산안을 편성한 다음에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도 다른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사업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정부에서 승인을 한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미니멈으로.

○정일영 위원 다른 현법기관들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다른 현법기관들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예산안으로 반영을 하고 이게 국회에 제출돼서 국회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일영 위원 그런데 한국은행은 그게 없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래서 정부가 전체적인 모든 경비를 다 본다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만 본다는 부분이고요.

○정일영 위원 그래서 그동안 많이 깎았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가 깎고 말고 할 예산, 인건비를 깎을 수……

○정일영 위원 심의하면서……

그냥 사전 승인이에요, 사전 승인?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저희하고 그냥 협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깎지 않았어요, 감액? 깎았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희가 최대한 요구를 많이 수용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금통위에서……

○정일영 위원 그것도 한번 작년하고 재작년 자료를 줘 보시고요, 최근 3년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시장 왜곡…… 아니, 전체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게 시장을 왜곡한다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검토의견인데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예산 규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국은행의 예산은 예산이고 통화신용정책은 신용정책이지 회의 몇 번 하느냐가 그게 무슨 통화신용…… 예산에 금통위 몇 번 열리느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매달 한 번씩? 그런데 예산하고 신용정책하고 뭐…… 예산이 발표되면 신용정책이 노출되나요?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결산은 국회에 보고가 되고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일영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 관련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국제적으로 보는 기준이 중앙은행의 전체 예산에 대해 국회나 이런 쪽에서 사전에 보느냐 안 보느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일영 위원 부총재님, 제가 질문하는 건 예산이 발표되고 그러면 우리 통화신용정책의 무슨 비밀이 새 나가냐고요?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저희들이 예산 할 때 외환시장 개입 예를 들면 얼마 정도 하겠다라는 게……

○정일영 위원 그게 예산에 들어가요, 얼마 정도 한다는 게?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예, 사전에 한도를 얼마 예산에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회의를 얼마나 하느냐, 그 회의하는 건 예산이……

○정일영 위원 아니, 무슨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말씀드린 대로 외환시장 개입할 때 한도라든가……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한도 몇천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산에?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예, 한도가. 줘야지 금통위에서……

○정일영 위원 그런데 그것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지 예산이 있다고 다 씁니까?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그래도 그만큼은 쓸 가능성이 많은……

○정일영 위원 쓸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게 기재부 예산이든 외평기금이든 다 있지뭐 한국은행만 있습니까?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예산은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중앙은행의 예산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지요.

○정일영 위원 부총재님, 다른 나라 얘기 뒤에 있어요, 자료에도. 그러니까 그것 제가 보면 되고.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일영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좀 답변하세요. 여기 본인이 무슨……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환시장이라든가……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면 되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외환시장 개입이라든가 통화정책……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정확하게 대답하시든지 자료를 주세요.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전반적으로는 한병도 의원의 개정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분이요.

○이종욱 위원 뒤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서구 쪽은 자율적인 것 같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륙계, 일본·독일 쪽은 우리 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은 보니까 경비예산 전체를 재무장관 승인을 받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97년부터 2003년까지 경비예산 전체를 통제하다가 2003년부터 급여성 경비로 축소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97년에 경비예산 사전 승인은 IMF 작업으로 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때 셀프 예산으로 승인한다 그래서 방만 경영의 우려가 제기돼서 그래도 전체 경비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 때문에 97년도에 법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는 하여튼 이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 사전 승인받는 거는 그렇게 과하지 않다, 최소한의 통제장치다 생각이 되고요. 한국은행 예산 확정할 때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는 거는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30일 전은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안 되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하여튼 확정되는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 제출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 독립기관의 경우에는 국회가 예산을 통제하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박성훈 위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또는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관이 아닌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관여하는 또는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들은 다 인건비를 통제받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총액인건비의 증가율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와 증가율을 다 기재부가 관리를 합니다.

부총재님, 통화신용정책하고 한국은행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기재부가 저희 정책, 어떤 측면에서 거시정책의 카운터파트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기능 수행 또는 지금 통화신용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이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의 사전승인은 한국은행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재님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는데 국가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행의 독립성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통화신용정책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분이요.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 계속 논의해야지요. 합의가 안 되네요. 38항은 계속 논의하고요.

의사일정 제3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금통위 심의 의결 사항에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여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고용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시행한다면 실물경제 지원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로 설정함에 있어서는 목표 간 상충 문제와 정책 수단의 효과성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실물경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이외에 고용안정이라는 목표가 추가될 경우 여러 가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목표 간에 일단 상충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통화정책을 가지고 과연 고용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 부분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정일영 위원 한국은행 입장은 뭡니까?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기재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물가안정 목표, 그 밑에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목표까지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리정책 가지고는, 거기에 고용안정까지 추가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거를 제대로…… 목표와 변수 간의 상충관계라든가 요새같이 다양하게 움직이는 경제환경 속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고용안정은 매크로, 거시정책에서 한국은행의 역할도 좀 있겠지만……

차관님, 기본적으로 고용안정은 재정정책, 정부의 역할이 훨씬 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요즘 청년들의 취업 문제, 고용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것을 한국은행의 목적에 넣으면, 금융통화정책이 뭐 고용하고 관련이 되기는 되지만 정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고 F4 회의나 이런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정부의 취지에 맞게, 고용안정에 맞게 통화정책을 쓰고 하는 게 맞지 꼭 목적에 넣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소위원장 정태호 정일영 위원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일영 위원 예.

○**소위원장 정태호** 오랜만에 정부하고 입장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윤호중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부총재보 나와 계시지요?

○**정일영 위원** 아니, 박대출 위원님하고도 의견이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 발언 중입니다.

○**정일영 위원**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윤호중 위원** 부총재보께서 잠깐……

지금 금통위에서 거시정책의 주요 방향 결정하고 할 때 실제로 고용안정을 고려하고 있지요?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예, 간접적으로 고용이 경제, 저희들의 목표라고 하는 물가안정……

○**윤호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게 목표…… 목적을 떠나서 이게 중요한 파라미터 아니에요?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맞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실제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법에 명시하자라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고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주요 목적으로 법에 명시될 경우에 저희들이 일차적인 목표인 물가안정이나 금융안정에……

○**윤호중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목적에다가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목적은 물가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2항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거기에 고용안정을 해서……

○**윤호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지금은 금융만 돼 있는데 금융 및 고용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목적 수행에 유의해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률 조항으로 상당히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밸런스를 잡기 힘들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목표인 고용안정이 추가돼서 유의해야 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에는 때때로 너무 많이 정책 수행하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제대로 수행……

○**윤호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와 국민이 한국은행한테 고용안정의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고용안정이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한은이 잘못했다 이렇게 무슨 책임 추궁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이 금융안정에 관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정책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용안정을 추구해 목적 조항 또는 유의 조항에 집어 넣어야 될 실익이 있느냐에 대한 저희들 판단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경제성장하고 고용이랑 같이 가는데.

○**윤호중 위원** 됐고요. 이창용 총재가 위낙 적극적인 성격이라 좀 입장이 바뀌었나 했더니 똑같네. 이건 20년도 넘은 논쟁이다.

○**소위원장 정태호**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를 보면 미국은 양대 책무로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목적으로 들어가 있나요?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예, 들어갔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한다는 거지요?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그런데 사실 연준은 금융규제 수단도 많고 또 금융안정이라는 것은 듀얼 맨데이트(dual mandate)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들은 아까 티어가 다르지만 물가안정에 세컨드 티어(second tier)로 금융안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안정에 유의하는데 매크로프루덴셜 메저(macroprudential measure)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고 연준은 금융규제 수단도 갖고 있으면서 물가안정과 고용 두 가지만 맨데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통화정책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목적을 자꾸 추가하는 건 원래의 목적이 자꾸 블러(blur)해지는, 묽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까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넣는 것도 상관없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윤호중 위원** 윤호중입니다.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아, 윤호중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윤호중 위원님, 저 부총재입니다.

○**윤호중 위원** 죄송합니다. 바로 돌아오네.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일을 주려고 그래도 한국은행이 하기 쉽다고 그러는데 뭐.....

○**박대출 위원**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이게 선수 옷 입히느냐 심판 옷 입히느냐 이런 논쟁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은법은 제가 자세히 다 못 봐서 그런데 혹시 목적이라는 데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재정 당국하고 볼 때 통화와 재정으로 이렇게 상정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통화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어색은 해요. 그래서 주요 업무에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한은법에? 지금 실질적으로 주요 업무로 다루고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법 안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건지, 목적이 아닌 다른 부분에 이 고용안정이라는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지, 그랬으면 이게 좀 절충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목적에

다가 고용안정을 넣는 것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취지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른 내용이 있나요, 한은법에?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다른 내용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고용안정 부분은 어떤 근거로 지금 다루고 있지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장이나 물가하고 고용은 불가피하게 역의 관계 내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또 고용이 경제성장의 후행지표일 경우도 있어서 금통위 정책금리 결정할 때는 경제성장이나 고용을 보고 이게 앞으로 물가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런 쪽으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취지는 현재 한은법에 그런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느냐를 물은 것이고 만일에 없다면 혹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일단 제가 아는 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요. 그것을 살린다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금융안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의 제안을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은 1조(목적)과 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이 3개 조항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는 안 넣더라도 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에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에서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그런데 제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거시정책에서 정부 정책하고 한국은행 정책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정부 정책이 있는데 고용정책으로 줄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 정책의 조화를 그냥 고용정책으로 줄이는 듯한 느낌을 오히려 주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저희 분석하고 발표하는 것은 정부 고용정책에 대한 판단 내지는 좀 개입 같은 느낌을 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도 보류해 놓고 가겠습니다. 39항 보류하고요.

다음은 40항·41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 확대와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대상기관 확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경제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구받은 정부기관 등이 그 요구에 따르도록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통계법상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통계청장을 통해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자료제출 요청이 가능하고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두고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 간 협조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정부도 현재 금융위원회법 제65조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필요하면 금융위원회나 기재부장관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조항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과태료 이 부분도 기존의 통계법에 따라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은행법에 이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 넣을 실익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한국은행 입장.

○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저희들이 국제적으로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즈니스가 커지고 또 그쪽을 통해서 금융의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요. 사실 저희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대출을 좀 늘리고 대출채권도 조금 확대해서 사전에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대출이나 대출채권을 늘려 주고 또 그 자료제출 요구받는 이런 전반적인 제도를 좀 개선하고자 이미 기재부, 금융위하고 협의는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안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제안해서 대출이나 대출채권 담보를 늘리는 안하고 같이 그에 맞추어서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이런 것을 좀 확대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한국은행은 찬성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더 비은행 금융기관 또는 비은행 예금기관에 대한 대출 그런 것들 확대와 함께 같이 병합 심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정일영 위원님.

○ 정일영 위원 간단하게, 이게 한국은행이 자료 요구를 정부기관 등에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이 요구를 하고 그 기관들이 따르도록 하는……

○ 한국은행부총재 유상대 예, 비은행 금융기관입니다.

○ 정일영 위원 그리고 그것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고요.

이것은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분이요.

○ 박수영 위원 한은도 좀 천천히 하자 그러니까 여건 성숙됐을 때 계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보류입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가 있어요. 42항부터 46항까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주로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이고 47항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제가 진행하면서 계속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저하고 차관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전혀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 5분 정도라도 잠깐 쉬었다가 오늘 끝낼 것이냐 아니면 여기까지 하고 갈 거냐인데……

○박수영 위원 그만하시지요, 약속도 있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제가 보기에는 대개 약속이 6시 반 아닌가요?

○박대출 위원 6시지요.

한 번 더 잡으시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럴까요?

○박수영 위원 한 번 더 잡아요. 급하게 그렇게 가는 것보다야……

○김영진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논의는 하는데 의결하기에 쉽지는 않은 사안이잖아요.

○박수영 위원 앞에 의결할 것 1개 있으니까 의결하시고 천천히 하시지요, 아주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많아요.

○김영진 위원 의결할 것만 하고, 이건 뒤에 후단이 내용이 많잖아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정일영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뒤의 것도 그렇고 예비비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후딱 그냥 한번 읽고 보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중요한 안건들인 것 같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의결할 것만 의결하고 다음에 한번 잡으시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은 다음 회의 일자리를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려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6분 산회)

---

### ○출석 위원(11인)

김영진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윤호중 이종욱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차규근  
횡명선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지은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예산총괄심의관 유병서  
재정건전성심의관 정창길  
한국은행  
부총재 유상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곽순현